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47
----------	-----

2022년 9월 26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8월 29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 2022년 9월 02일
- 다. 상정일자 : 제314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2년 9월 26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서울특별시장]

가. 제안이유

- 한강공원 이용시설의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체육시설 이용료 징수기준을 정비함.

나. 주요골자

- 가. 한강공원 테니스장 기본이용료를 정비하고, 야간(조조시간 조명이용 시 포함)·토요일·공휴일 가산제 및 체육경기용의 전용사용제 징수기준을 신설함(안 별표 2 제2호).

나. 한강공원 파크골프장 징수기준을 신설함(안 별표 2 제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 제161조 등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1) 입법예고 ('22. 6. 9. ~ '22. 6. 29.) 결과: 의견 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조문대비표(별도 첨부)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석전문위원 : 피재황]

가. 개요

- 한강 내 공원 이용시설은 동 조례 [별표2]에 이용료 부과 규정에 근거하여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중 테니스장 요금을 변경하고 파크골프장 요금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현재 한강공원에는 22개 종목 258면의 체육시설이 설치되어있으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일부는 공공예약 시스템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음.

〈표 1〉 한강공원 체육시설 운영현황

구 분	직 영 시 설		민간운영시설 (위탁·수익허가)	
	공공예약 시스템운영	상시이용시설 (무료)	온라인예약 시스템 운영	예약 미운영
체육시설	축구장, 야구장, 배구장, 족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풋살경기장	인공인벽장, 파크골프장, 우드볼장, 인라인장, X-게임장, 게이트볼장, 비치발리볼, 다목적운동장, 육상연습장, 씨름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자체시스템) 눈썰매장(자체시스템)	이촌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난지국궁장 이촌축구교육장(회원제) 론볼링장

- 한강공원 테니스장을 비롯하여 이촌축구경기장, 이촌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난지 국궁장, 잠실 론볼링장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하여 일반입찰의 최고가 낙찰을 통해 운영자를 선정하는 사용수익 허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 공원이용시설 이용료 부과는, 동 조례 [별표2]에 시설별 이용료 범위(최소~최대)를,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는 이용료 및 이용시간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음.

- 한강공원 테니스장의 경우 5개 한강공원(뚝섬, 광나루, 이촌, 잠원, 망원)에 총 30면(전체규모 23,261㎡)이 설치 되어있음.

〈표 2〉 테니스장 시설 및 운영현황

구 분	뚝섬	광나루	이촌	잠원	망원
위 치	광진구 자양동 410-1 (뚝섬한강공원내)	강동구 암사동 637-6 (광나루 한강공원내)	용산구 이촌동 302-17 (이촌 한강공원내)	서초구 잠원동 121 (잠원 한강공원내)	마포구 망원동 205-4 (망원 한강공원내)
규 모	2,680㎡ 4면(클레이)	5,627㎡ 8면(클레이)	6,954㎡ 8면(클레이)	4,000㎡ 4면(클레이)	4,000㎡ 6면(클레이)
수허가자	오○○(개인)			이○○(개인)	
예정가격 (3년)	293,400천원			215,761천원	
낙찰가격 (사용료)	939,990천원			680,000천원	
허가기간	'20. 2. 1. ~ '23. 1. 31.(이촌) '20. 4. 1. ~ '23. 3. 31.(뚝섬, 광나루)			'21. 8. 1. ~ '24. 7. 31.	

- 이용료 정비 대상인 테니스장의 경우 현행 조례에서는 4,500원~6,400원으로 이용료 범위가 정해져 있으며, 개정안은 이를 7,000원~11,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려 함. 이는 타 공원 내 테니스장 이용료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무료로 운영하는 테니스장을 2006년 사용수익허가 방식으로 운영방식을 변경한 이후 테니스장 이용료를 한 차례도 인상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시설의 효율적 운영이나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다면 이용료를 인상(이용료 범위 상향 조정)하여 현실화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그동안의 물가 상승분을 감안하더라도 일시에 과도하게 이용료를 인상은 것은 테니스장 이용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여지가 있으므로, 테니스장 이용료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을 통해 합리적 수준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표 3〉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상향 조정되는 동 조례 테니스장 일반이용료 및 타공원 테니스장 이용료 비교

기 준	현행	개정안	도시공원조례
면당 1회 2시간 이내, 단체독점사용시	4,500 ~ 6,400원	7,000~11,000원	8,000~16,000원(실외) 25,000~37,500원(살내)

- 또한 테니스장 사용시 조명이 필요한 조조 및 야간시간대의 이용료에 30%를 가산하여 조명이용료를 부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으나, 주말 및 공휴일 이용에 대한 30% 가산 기준 신설은 이미 타공원 체육시설에서 도입을 하고 있다하더라도 일시에 과도하게 테니스장 이용료 상승을 가져와 테니스장 이용시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한강공원 모든 체육시설이 아닌 테니스장에만 주말 및 공휴일 이용료를 차등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음.
- 테니스장 코트 전용사용(1면 1회 10시간 이내)에 대한 이용료 기준을 신설하여 코트 전용 사용제를 도입하는 것은 테니스장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테니스장 이용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개인이 아닌 특정 동호회나 단체가 테니스장 코트를 독점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있기에 이용료 부과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표 4〉 테니스장 코트 전용사용제 운영사례

지 역	시설명	전용사용료	용도
송파구	오륜·송파·성내천 테니스장	15,000(1면 1시간)	체육경기
양천구	목동테니스장	평일 70,000원, 주말 및 공휴일 91,000 (1면 8시간)	체육경기
강동구	명일·강일 테니스장	20,000(1면, 2시간)	체육경기
마포구	망원나들목 테니스장	주중 90,000원 토요일·공휴일 117,000원 (1면 10시간)	체육경기
종로구	삼청테니스장	주중 90,000원 토요일·공휴일 143,000원 (1면 10시간)	

- 더불어, 본 개정안 부칙을 살펴보면 기 체결된 테니스장 사용·수익허가가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조례 개정에 따른 이용료 인상이 시행됨에 따라 테니스장별(이촌 vs 잠원·망원) 최대 1년 6개월의 이용료 인상 시차가 발생하여 테니스장 이용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에, 개정안의 적용 시기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임.
- 2005년 개장한 한강공원 파크골프장은 한강사업본부에서 무료로 직영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로, 선착순 자율 이용을 통해 1일 평균 140여명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노령인구 증가와 높아진 골프에 대한 관심으로 파크골프장 이용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표 5〉 한강공원 내 파크골프장 현황

○ 위 치	: 영등포구 여의도동 70-1번지(63빌딩 동남쪽 한강 둔치)
○ 규 모	: 9,267㎡
○ 코 스	: 15홀 / PAR 57 / 연장 891m
○ 부대시설	: 입구 안내표지판 1개, 코스표지판 15개, 홀컵·홀핀·깃발, 물품 보관창고 2동, 먼지털이기, 벤치 등
○ 개 장 일	: 2005년 3월 1일

- 서울시 내 공공으로 운영되고 있는 많은 수의 파크골프장이 유료로 운영 중이거나 유료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강공원 파크골프장 역시 유료 전환을 통해 이용자 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무료 직영 운영에 따른 시설관리 부진의 문제 역시 해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른 파크골프장의 평균 이용료 수준으로 이용료와 물품대여료 기준을 신설하는 것에 별다른 이견은 없음.

〈표 6〉 서울시 내 파크골프장(공공운영) 10개소 이용료 부과 기준

유료		무료	
잠실 파크골프장 (9홀)	(평 일) 성인 4,000원, 청소년 3,000원, 어린이 2,000원/2시간 (공휴일) 성인 5,200원, 청소년 3,900원, 어린이 2,600원/2시간	금천구 파크골프장	-
		양천구 파크골프장	-
		중랑천(노원구) 파크골프장	-
노을 파크골프장 (18홀)	성인 4,000원, 청소년 3,000원 어린이 2,000원	중랑천(광진구) 파크골프장	유료예정 (동대문수준)
중랑천(동대문) 파크골프장 (9홀)	8천원/4시간	도림천(구로구) 파크골프장	유료예정 (조례개정검토중)
서남 파크골프장 (9홀)	6천원/18홀 기준	인양천(구로구) 파크골프장	유료예정 (조례개정검토중)

※ 장비 대여 시 1천원/1세트

- 평균요금(성인기준) : 18홀 기준 5,000원, 2시간 기준 (평일)4,000원(공휴일)4,600원

- 다만, 현재 여의도 파크 골프장은 선착순 자율 이용에 따른 이용자간 마찰 발생과 이용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용료 기준 신설과 함께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파크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약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의 표 중 테니스장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이촌 인라인롤러 스케이트장란 아래에 파크골프장란 및 파크골프장물품대여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테니스장	면당 1회 2시간 이내, 단체 독점 사용 시	7,000~11,000원 ※ 토요일·공휴일은 주간 이용료의 30% 가산함. ※ 조조시간은 조명 이용 시 주간이용료의 30% 가산함. 다만, 토요일·공휴일의 조조시간은 조명 이용하더라도 가산하지 않음. ※ 야간시간은 주간이용료의 30% 가산함. 다만, 토요일·공휴일 야간시간에는 가산하지 않음.
	월간 정기사용 시(조조시간에 한하며 1일 2시간이내 사용)	108,000~154,000원
	1면 1회 10시간 이내 전용사용(체육경기) 시	70,000~150,000원
파크골프장	어린이(6세 이상 12세 이하) 1회당	2,000 ~ 3,000원
	청소년(13세 이상 18세 이하) 1회당	3,000 ~ 4,000원
	성인(19세 이상) 1회당	4,000 ~ 6,000원
파크골프장 물품대여료	클럽(1회당, 개당)	1,000 ~ 2,000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 중 테니스장
란의 개정규정은 기 체결된 테니스장 사용·수익허가가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시행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별표 2] <u>공원이용시설 이용료(제14조 관련)</u></p> <p>1. 수상이용시설 (생략)</p> <p>2. 체육시설</p>	<p>[별표 2] <u>공원이용시설 이용료(제14조 관련)</u></p> <p>1. 수상이용시설 (현행과 같음)</p> <p>2. 체육시설</p>
구분	기준 및 이용료
축구장	(생략) (생략)
어린이야구장	(생략) (생략)
성인야구장	(생략) (생략)
배구장 족구장 농구장	(생략) (생략)
테니스장	<p>면당 1회2시간 이내, 단체 독점 사용 시 4,500~6,400원 <신설></p> <p>월간 정기사용시(조조시간에 한하며 1일 2시간이내 사용) <신설> 68,000~96,000원 <신설></p>
국궁장	(생략) (생략)
구분	기준 및 이용료
축구장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어린이야구장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성인야구장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배구장 족구장 농구장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테니스장	<p>면당 1회2시간 이내, 단체 독점 사용 시 7,000~11,000원</p> <p>※ 토요일.공휴일은 주간이용료의 30% 가산함.</p> <p>※ 조조시간은 조명 이용시 주간이용료의 30% 가산함. 다만, 토요일.공휴일의 조조시간은 조명 이용하더라도 가산하지 않음.</p> <p>※ 야간시간은 주간이용료의 30% 가산함. 다만, 토요일.공휴일 야간시간에는 가산하지 않음.</p> <p>월간 정기사용시(조조시간에 한하며 1일 2시간이내 사용) 108,000~154,000원</p> <p>1면 1회 10시간이내 전용사용(체육경기) 시 70,000~150,000원</p>
국궁장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축구교육장	(생략)	(생략)
배드민턴장	(생략)	(생략)
이촌 인라인 롤러스케이팅장	(생략)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비 고: 이용시간은 06:00부터 22:00까지로 하되 일출·일몰시 간과 조명시설 유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 다.(조조시간 : 06:00 ~ 09:00)		

3 ~ 8. (생략)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축구교육장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배드민턴장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이촌 인라인 롤러스케이팅장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파크골프장	어린이(6세 이상 12세 이하) 1회당	2,000 ~ 3,000원
	청소년(13세 이상 18세 이하) 1회당	3,000 ~ 4,000원
	성 인(19세 이상) 1회당	4,000 ~ 6,000원
파크골프장 물품대여료	클럽(1회당, 개당)	1,000 ~ 2,000원
(현행과 같음)		

3 ~ 8.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7
----------	-----

제출년월일 : 2022년 8월 29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한강공원 이용시설의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체육시설 이용료 징수 기준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한강공원 테니스장 기본이용료를 정비하고, 야간(조조시간 조명 이용 시 포함)·토요일·공휴일 가산제 및 체육경기용의 전용사용제 징수기준을 신설함.(안 별표 2 제2호).

나. 한강공원 파크골프장 징수기준을 신설함.(안 별표 2 제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 제161조 등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타

(1) 입법예고 ('22. 6. 9. ~ '22. 6. 29.) 결과: 의견 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의 표 중 테니스장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이촌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장란 아래에 파크골프장란 및 파크골프장물품대여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테니스장	면당 1회 2시간 이내, 단체 독점 사용 시	7,000~11,000원 ※ 토요일·공휴일은 주간 이용료의 30% 가산함. ※ 조조시간은 조명 이용 시 주간이용료의 30% 가산함. 다만, 토요일·공휴일의 조조시간은 조명 이용하더라도 가산하지 않음. ※ 야간시간은 주간이용료의 30% 가산함. 다만, 토요일·공휴일 야간시간에는 가산하지 않음.
	월간 정기사용 시(조조시간에 한하며 1일 2시간이내 사용)	108,000~154,000원
	1면 1회 10시간 이내 전용사용(체육경기) 시	70,000~150,000원
파크골프장	어린이(6세 이상 12세 이하) 1회당	2,000 ~ 3,000원
	청소년(13세 이상 18세 이하) 1회당	3,000 ~ 4,000원
	성 인(19세 이상) 1회당	4,000 ~ 6,000원
파크골프장 물품대여료	클럽(1회당, 개당)	1,000 ~ 2,000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 중 테니스장
란의 개정규정은 기 체결된 테니스장 사용·수익허가가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시행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2] 공원이용시설 이용료(제14조 관련)</p> <p>1. 수상이용시설 (생략)</p> <p>2. 체육시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0%;">구 분</th> <th style="width: 40%;">기 준 및 이 용 료</th> <th style="width: 50%;"></th> </tr> </thead> <tbody> <tr> <td>축 구 장</td> <td>(생략)</td> <td>(생략)</td> </tr> <tr> <td>어린이야구장</td> <td>(생략)</td> <td>(생략)</td> </tr> <tr> <td>성인야구장</td> <td>(생략)</td> <td>(생략)</td> </tr> <tr> <td>배 구 장 족 구 장 농 구 장</td> <td>(생략)</td> <td>(생략)</td> </tr> <tr> <td rowspan="2">테니스장</td> <td>면당 1회2시간 이내, 단체 독점 사용 시</td> <td>4,500~6,400원 <신설></td> </tr> <tr> <td>월간 정기사용시(조조시간에 한하며 1일 2시간이내 사용) <신설></td> <td>68,000~96,000원 <신설></td> </tr> <tr> <td>국궁장</td> <td>(생략)</td> <td>(생략)</td> </tr> </tbody> </table>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축 구 장	(생략)	(생략)	어린이야구장	(생략)	(생략)	성인야구장	(생략)	(생략)	배 구 장 족 구 장 농 구 장	(생략)	(생략)	테니스장	면당 1회2시간 이내, 단체 독점 사용 시	4,500~6,400원 <신설>	월간 정기사용시(조조시간에 한하며 1일 2시간이내 사용) <신설>	68,000~96,000원 <신설>	국궁장	(생략)	(생략)	<p>[별표 2] 공원이용시설 이용료(제14조 관련)</p> <p>1. 수상이용시설 (현행과 같음)</p> <p>2. 체육시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0%;">구 분</th> <th style="width: 40%;">기 준 및 이 용 료</th> <th style="width: 50%;"></th> </tr> </thead> <tbody> <tr> <td>축 구 장</td> <td>(현행과 같음)</td> <td>(현행과 같음)</td> </tr> <tr> <td>어린이야구장</td> <td>(현행과 같음)</td> <td>(현행과 같음)</td> </tr> <tr> <td>성인야구장</td> <td>(현행과 같음)</td> <td>(현행과 같음)</td> </tr> <tr> <td>배 구 장 족 구 장 농 구 장</td> <td>(현행과 같음)</td> <td>(현행과 같음)</td> </tr> <tr> <td rowspan="2">테니스장</td> <td>면당 1회2시간 이내, 단체 독점 사용 시</td> <td>7,000~11,000원 ※ 토요일,공휴일은 주간이용료의 30% 가산함. ※ 조조시간은 조 명 이용 시 주간이용료의 30% 가산함. 다만, 토요일, 공휴일의 조 조시간은 조 명 이용하더라도 가산하지 않음. ※ 야간시간은 주간이용료의 30% 가산함. 다만, 토요일, 공휴일 야간 시간에는 가 산하지 않음.</td> </tr> <tr> <td>월간 정기사용시(조조시간에 한하며 1일 2시간이내 사용) 1면 1회 10시간 이내 전용사용(체육경기) 시</td> <td>108,000~154,000원 70,000~150,000원</td> </tr> <tr> <td>국궁장</td> <td>(현행과 같음)</td> <td>(현행과 같음)</td> </tr> </tbody> </table>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축 구 장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어린이야구장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성인야구장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배 구 장 족 구 장 농 구 장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테니스장	면당 1회2시간 이내, 단체 독점 사용 시	7,000~11,000원 ※ 토요일,공휴일은 주간이용료의 30% 가산함. ※ 조조시간은 조 명 이용 시 주간이용료의 30% 가산함. 다만, 토요일, 공휴일의 조 조시간은 조 명 이용하더라도 가산하지 않음. ※ 야간시간은 주간이용료의 30% 가산함. 다만, 토요일, 공휴일 야간 시간에는 가 산하지 않음.	월간 정기사용시(조조시간에 한하며 1일 2시간이내 사용) 1면 1회 10시간 이내 전용사용(체육경기) 시	108,000~154,000원 70,000~150,000원	국궁장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축 구 장	(생략)	(생략)																																													
어린이야구장	(생략)	(생략)																																													
성인야구장	(생략)	(생략)																																													
배 구 장 족 구 장 농 구 장	(생략)	(생략)																																													
테니스장	면당 1회2시간 이내, 단체 독점 사용 시	4,500~6,400원 <신설>																																													
	월간 정기사용시(조조시간에 한하며 1일 2시간이내 사용) <신설>	68,000~96,000원 <신설>																																													
국궁장	(생략)	(생략)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축 구 장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어린이야구장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성인야구장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배 구 장 족 구 장 농 구 장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테니스장	면당 1회2시간 이내, 단체 독점 사용 시	7,000~11,000원 ※ 토요일,공휴일은 주간이용료의 30% 가산함. ※ 조조시간은 조 명 이용 시 주간이용료의 30% 가산함. 다만, 토요일, 공휴일의 조 조시간은 조 명 이용하더라도 가산하지 않음. ※ 야간시간은 주간이용료의 30% 가산함. 다만, 토요일, 공휴일 야간 시간에는 가 산하지 않음.																																													
	월간 정기사용시(조조시간에 한하며 1일 2시간이내 사용) 1면 1회 10시간 이내 전용사용(체육경기) 시	108,000~154,000원 70,000~150,000원																																													
국궁장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축구교육장	(생략)	(생략)	축구교육장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배드민턴장	(생략)	(생략)	배드민턴장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이촌 인라인 롤러스케이팅장	(생략)	(생략)	이촌 인라인 롤러스케이팅장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신설>	<신설>	<신설>	파크골프장	어린이(6세 이상 12세 이하) 1회당	2,000 ~ 3,000원
				청소년(13세 이상 18세 이하) 1회당	3,000 ~ 4,000원
				성 인(19세 이상) 1회당	4,000 ~ 6,000원
<신설>	<신설>	<신설>	파크골프장 물품대여료	클럽(1회당, 개당)	1,000 ~ 2,000원
비 고: 이용시간은 06:00부터 22:00까지로 하되 일출·일몰시간 과 조명시설 유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조조시간 : 06:00 ~ 09:00)			(현행과 같음)		
3 ~ 8. (생략)			3 ~ 8.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른 한강공원이용시설의 징수기준을 신설(무료→유료)하거나 이용료를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세입 감소 또는 세출 지출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항임.

4. 작성자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여가과 심정은 ☎ 02-3780-0839